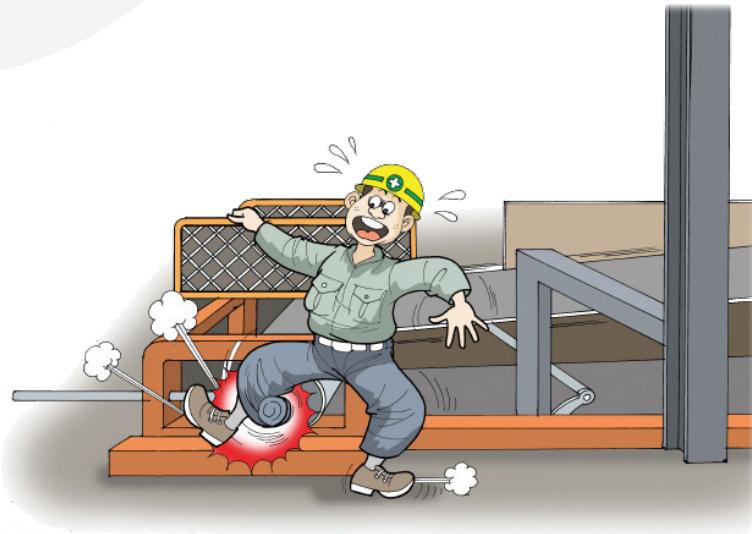


온습기 중대재해사례 조율



산업현장에서 하루 7명 사망

2008년도 한해 동안 전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2,42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천 물류냉동창고 용접작업중 **화재사고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사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2개 기인물(설비)에서 사망재해가 3,137명 발생**하였으며, 동 자료는 기인물별 사망재해 발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인물(설비)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시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당 기인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기인물별 재해발생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여 동일 재해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물별 최근 10년간 사망재해 현황

자료 번호	기인물	사망자수	자료 번호	기인물	사망자수
22-1	전기설비	498명	22-12	공작·절단기계	87명
22-2	크레인	401명	22-13	프레스, 용해로	74명
22-3	계단 및 사다리	395명	22-14	혼합기, 교반기	69명
22-4	지게차	284명	22-15	저장탱크	63명
22-5	운반·굴착기계	226명	22-16	성형기, 압출기	56명
22-6	휴대용 기계기구	197명	22-17	저장용기·시설	40명
22-7	운반특장차량	141명	22-18	분쇄기, 파쇄기	39명
22-8	승강기	131명	22-19	건조기, 로울러기	37명
22-9	용접장치	117명	22-20	펌프 등 이송압축설비	29명
22-10	콘베이어	116명	22-21	로봇, 정련기	24명
22-11	리프트	94명	22-22	목재가공기계, 신선기	19명

목 차



- 01 벨트콘베이어에 옷자락 감김으로 인한 협착
- 02 벨트콘베이어 청소작업중 협착
- 03 집진기 청소작업중 실족하여 스크류에 협착
- 04 벨트콘베이어 동시 점검작업중 협착
- 05 가동중인 콘베이어 벨트 풀리에 협착
- 06 석분제거 작업중 콘베이어 벨트와 드럼 사이 협착
- 07 벨트콘베이어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중 협착
- 08 콘베이어 구동용 벨트풀리에 협착
- 09 버킷 콘베이어 구동벨트 체결 작업중 협착
- 10 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
- 11 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

벨트콘베이어에 옷자락 감김으로 인한 협착

재해발생과정

크라샤 운전실에서 스위치를 조작하여 크라샤 및 벨트콘베이어 설비를 가동시켜 놓고, 벨트콘베이어 운전상태 점검중 구동체에 붙어 있는 결빙상태의 적분 및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려오던중 작업복 옷자락이 회전하는 롤과 벨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설비가동중에 이물질 제거
- 운전실 밖 전원차단 장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등 작업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벨트콘베이어에는 작업자가 접근하여도 협착 위험이 없도록 롤 구동부 및 웨이트부에는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을 하여야 함

벨트콘베이어 청소작업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골재를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콘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골재를 재해자가 긁어 모아 회전중인 콘베이어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리덴 로울러와 콘베이어 벨트 사이에 팔과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벨트콘베이어 기동중 청소작업 실시
- ☞ 벨트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에 대한 방호 미실시
- ☞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부적절



재해 예방대책

- ☞ 벨트콘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등 작업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 스위치에는 잠금장치 설치 또는 “청소중” 꼬리표를 부착하고 작업 하여야 함
- ☞ 벨트콘베이어 하부 리덴로울러 등 위험점에 방호울 및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방지율 설치하여야 함
- ☞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장 입구 이외에 작업현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정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집진기 청소작업중 실족하여 스크류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집진기 청소를 위하여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중 호퍼 내부에 설치된 보강용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가동중인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기계 운전중 청소작업 실시
- ☞ 추락방지 조치미흡
- ☞ 집진기 개방문 연동장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 기계의 청소 · 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시킨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 호퍼 지지대 상부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 청소, 정비작업을 위해 집진기 개방문을 열었을 경우 분진배출용 스크류가 정지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벨트콘베이어 동시 점검작업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콘베이어벨트 손상부위를 보수후 다른 부분의 벨트를 점검하기 위해 콘베이어를 재가동하는 순간 상부측에서 벨트 이탈방지 스위치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벨트 위에서 전도되어 30m 정도 이동후 벨트의 처짐 및 요동방지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콘베이어 등을 동시에 점검·수리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무전기 등)을 정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콘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자동중인 콘베이어 벨트 풀리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제강 슬러지 재생설비 공정에서 기동 중인 슬러지 이송용 콘베이어 벨트에 근접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벨트와 풀리 사이에 작업복 하의가 밀려들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덮개 및 방호율 미설치
- ▶ 비상정지 장치 보완 미흡



재해 예방대책

- ▶ 콘베이어 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콘베이어 주변에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pull-cord식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석분제거 작업중 콘베이어 벨트와 드럼 사이 협착

재해발생과정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파쇄기 골재 이송용 콘베이어 하단에서 삽을 이용하여 석분제거 작업중 콘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삽과 작업복이 말리면서 삽이 재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질식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콘베이어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 회전축 등에 방호율 미설치
-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 콘베이어 청소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 콘베이어 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콘베이어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거나 비상시에는 즉시 콘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벨트콘베이어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콘크리트 벽돌제조공정에서 투입된 원자료를 호퍼에서 혼합기로 이송하는 벨트콘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콘베이어와 롤러사이에 왼쪽 팔이 말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벨트콘베이어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 벨트콘베이어 점검 · 정비 등의 작업시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점검중”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 벨트콘베이어에 근로자가 말려들 위험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 벨트콘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이상발견 시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콘베이어 구동용 벨트 풀리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구동용 V벨트 일부가 이탈되어 알루미늄 형강 이송용 콘베이어에 접근하여 V벨트 복귀 작업수행중 벨트와 풀리 훔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구동축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 원동기 · 회전축등의 위험방지 미흡
-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재해 예방대책

-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 올 ·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콘베이어 구동용 벨트 풀리 주변에는 위험상황 발생시 콘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버킷 콘베이어 구동벨트 체결 작업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곡물분쇄 공정에 사용되는 버킷 콘베이어의 평벨트를 회전하고 있는 풀리에 체결하던중 작업복 소매가 풀리와 평벨트 사이에 밀려들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 벨트 체결방법 불량
- ☞ 벨트 관리 미흡



재해 예방대책

- ☞ 벨트는 구동전동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인력을 이용하여 체결하여야 함
- ☞ 콘베이어 구동용 벨트 풀리 주변에는 위험상황 발생시 콘베이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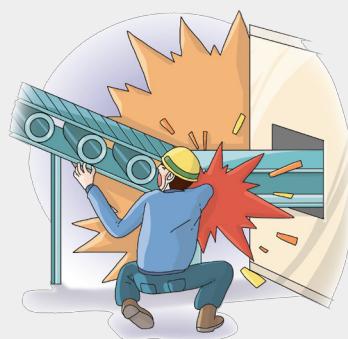
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분쇄작업장에서 재해자가 분쇄기 시운전 후 동료 작업자에게 스위치 조작업무를 인계하고 휴게실로 이동 하던중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 제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벨트와 풀리사이에 판재 삽입 도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콘베이어에 낙하방지시설 미설치
-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 예방대책

- 벨트콘베이어 이송물 낙하시 위험점에 제품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벨트콘베이어 구동부에 작업자가 접근하여도 협착 위험이 없도록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을 설치하여야 함

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

재해발생과정

곡물을 분리기에서 건조기로 스크류콘베이어를 이용하여 운반하던중 곡물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의 덮개를 개방하고 점검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원인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재해 예방대책

- 높이 2m이상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 주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표지

1 금지 표지



2 경고 표지



3 지시 표지



4 안내 표지



인 쇄 : 2009년 7월

발 행 : 2009년 7월

발 행 인 : 노민기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기술국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구산동 34-4)

전 화 : 032)5100-605

인 쇄 : 경희정보인쇄 TEL. 031)907-7534

비매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구산동 34-4)
TEL (032)5100-605 FAX (032)515-5897

본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허락없이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영리목적으로 사본을 금지합니다
(<http://www.kosha.or.kr>→안전사업→High-Five운동에서 다운)